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사용자 매뉴얼 (ver 4.0)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제1절 개요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란?	
가. 개념	1
나. 개방 목적	1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개발 추진 경과	
제2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구성 방향성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선정기준	2
가. 안전한 데이터 중심의 개방(Safety) - 개인정보보호 중점	2
1)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외	2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적용	2
나. 활용중심의 데이터 개방(Utilization) -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	2
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개방(Reliability)	3
2. 개방 데이터셋의 생성 형태	3
가. 개방데이터셋 생성 방식 및 범위	3
나. 개방데이터셋 갱신 주기	3
다. 개방데이터셋 제공 형태	3
제3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상세	
[진료내역정보]	4
1. 개념 및 구성	4
1) 개념	4
2) 구성	4
2. 개방항목 설명	4
3. 진료내역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8

제4절	국가중점	개방데이	터(진료내의	보정보)	다운로드	밧번
/11 4 4	7/10 0	/ II O - II	- 1 (1.35	104/	- 11	0 8

1. 5.1.10101EVE 0.000 CMINOVERNO STATE OF THE TANK COMMISSION OF THE STATE OF THE S	1.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웬페이지 [활용	방법 소기		9
--	----	----------------------	----------	----	-------	--	---

제5절 사용자 지원 사항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활용기	아이드 및 사례	제공		1
-------------------	----------	----	--	---

- 3.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다운로드 전에 데모자료 제공기능 지원1

Q&A 묻고 답하기

제1절

개요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란?

가. 개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정부3.0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민간으로부터의 개방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개방되는 공공개방데이터이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축적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진료 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진정보이다. 공단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개인정보와 민감성데이터는 제외 또는 마스킹 처리를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개방 데이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대상 년도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며, 향후 대상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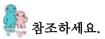
나. 개방 목적

첫째,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보유·관리하고 있는 주요 보건 의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보 관련 산업계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 창출을 돕고자 한다. 셋째, 개인중심의 진료내역, 의약품처방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로서 의료기관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는 건강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보건 의료 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개발 추진 경과



2011년 전국민 5천 만 명의 9년간(2002~2010년)의 건강보험 정보를 수집하여 초기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센터 등 1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자료 공개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정보DB 공개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규정(규정 제130호)」를 제정하였고, 2015년 1월 표본코호트DB 이용신청 및 국민건 강정보DB 연구자 지원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2015년 12월 민간개방을 위해 진료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진정보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구축 제공하고, 2016년 12월(현재)에 추가 자료 2014~201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 국민건강정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박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방데이터 발굴 및 생성을 목적으로 구축한 모집단DB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 진료내역상세(병원/의원이용 내역, 노인장기요강·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테이블 수는 3,544개, 용량은 약 21,236GB 임

제2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구성 방향성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선정기준

가. 안전한 데이터 중심의 개방(Safety) - 개인정보보호 중점

1)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ex.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국민건강보험자격번호 등),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등은 국가 중점 개방데이터 항목에서 제외 하였다.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적용

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필터링 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별 항목에 적합한 비식별화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식별가능성을 제외하였다.

구 분	내 용
표본의 추출	• 각 연도별 진료 및 건강검진 수진 환자 100만명 무작위 추출 - 진료환자, 약품차방환자, 건강검진 수진자를 연모별로 갹칵 1백만 명씩 무작위로 추출
자료별 조합제한	• 동 자료는 단면자료로써 각 DB별 개인일련번호와 청구일련번호를 다르게 하여 제공(연계 불가능)
개인식별자 제거	 주민등록번호(13) → 개인일련번호(8자리)
범주화	 연령 그룹화 연령 → 연령대(5세 단위) 85세 이상은 '85세 이상'으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민감상병 D, O, P, X, Y코드(5종, 114개)를 대분류화(예:D***) D(7개 코드): 남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O(81개 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자궁외 임신 등 P(4개 코드): 기타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질환 X(1개 코드):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Y(2개 코드): 특수목적 코드,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 등
최상위 지역코드 제공	• 소규모 지역에 거주하는 표본의 인식을 고려하여 시도코드 에 한하여 제공(17개 시도단위 제공)

나. 활용중심의 데이터 개방(Utilization) -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개방되는 데이터 항목 및 제공 방법 등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방항목 및 제공형태 등을 구성하였다. 단수요조사를 통하여 요구되었던 항목의 일부는 민감성 데이터로 분류되어 개방이 제한되었으며, 공단은 수요자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고유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운전면허의 면허번호 ④ 외국인 등록 번호를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고유식별 정보의 범위))

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개방(Reliability)

국가중점 개방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믿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 발굴 시점부터 데이터 값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개방 항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정보 문진항목 중 수검자가 직접 기입하는 항목 등은 데이터 값의 오류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개방 데이터셋의 생성 형태

가. 개방데이터셋 생성 방식 및 범위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중 진료내역정보는 2002년부터 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 보험가입자 100만 명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로써, 100만 명의 선별은 무작위 선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제한됨에 따라 부분적인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였다.

진료내역정보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 년도에 요양(병/의원)기관으로 부터의 진료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가입자 100만 명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항목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해당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진료정보를 추출하여 진료내역정보데이터셋을 1차적으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진료내역정보데이터셋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간분포비율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진료내역정보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나. 개방데이터셋 갱신 주기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의 모든 개방데이터셋은 매년 12월에 2년 전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여 1년 단위로 데이터를 갱신 한다. 예를 들면 2014년도 데이터는 2016년 12월 추가되는 형태이다.

다. 개방데이터셋 제공 형태

데이터셋의 자료 구조(포맷)는 CSV(Comma Separated Value)이며, 데이터 활용 및 다운로드의 편의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분할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3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상세

【진료내역정보】

1. 개념 및 구성

1) 개념

진료내역정보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요양기관(병, 의원 등)으로부터의 진료이력이 있는 각 연도별 수진자 100만 명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시도코드 등)와 진료내역(진료과목코드, 주상병 코드, 요양일수, 총처방일수 등)으로 구성된 개방데이터이다.

2) 구성

총 19개의 변수로 가입자 일련번호와 진료내역 일련번호, ① 수진자 기본정보 : 성, 연령, 거주지 시도코드와 같은 기본정보 ② 진료상세 정보 : 주상병, 부상병, 요양일수, 입·내원일수, 총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 정보, ③ 요양급여 청구 심사 결과 : 요양급여 청구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보험자와 수진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 등 요양급여 청구 심사결과 값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 요양기관이란?

-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
-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③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 희귀의약품센터'
-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 의료원 및 보건지소
-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국민전강보험공단 제42조요양기관))

2. 개방항목 설명

			제공항목	속성기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i>표</i> 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	기준년도	STND_Y	• 해당 정보의 기준년도를 제공함	YYYY	2009	
2	가입자 일련번호	IDV_ ID	해당가입자에 부여한 일련번호1 ~ 1,000,000	N	1	
3	진료내역 일련번호	KEY_SE Q	• 해당진료내역에 대한 일련번호	N	1	
4	성별코드	SEX	해당 정보 대상자의 성별을 제공함 성별: 1(남자), 2(여자)	N	1	•
5	연령대 코드	AGE_ GROUP	• 기준년도에 수진자의 나이를 5세 단위로 그룹화(범주화)하여 구분한 코드 - (총 18개 그룹) 0~84세까지 5세 단위 그룹화, 85세 이 상은 85+로 그룹화 그룹 연령대 그룹 연령대 1 0~4세 10 45~49세 2 5~9세 11 50~54세 3 10~14세 12 55~59세 4 15~19세 13 60~64세 5 20~24세 14 65~69세 6 25~29세 15 70~74세 7 30~34세 16 75~79세 8 35~39세 17 80~84세 9 40~44세 18 85세+	N	11	•

◎ 명세서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진료, 조제 등을 하고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종류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포합됨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됨 (의료법 제3조 제2항 참조)

			7	세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	설명		<i>표현형</i> 식 /단위	예시	비고
6	시도코드	SIDO	지의 데이I 코드명 /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터에는 해당 형 시도명 코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l가 신규로 편입됨 항목이 존재하지	시도명	N	26	•
7	요양개시 일자	RECU_ FR_DT	내원한 연,	월, 일		진자가 요양기관에	YYYY MM DD	2008 1124	
8	서식코드	FORM_ CD			_		N	02	•
9	진료과목 코드	DSBJT_ CD	경우 실제전 상병 명에 - 진료과목이 - 보건복지부]료를 받은 진 해당되는 진 2개 이상에 ⁵ 고시 제2014-92	료과목, 의원급 료과목 해당하는 경우 성호 「요양급여비용 <별표 5"진료과	의료기관일 경우 병별로 모두 제공 청구방법, 심사청구 목별 코드">를 따름 의과 보건기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 선과 구강박리과 예방치과 한방부인과 한방수이과 한방안과, 이비인 한방신경정신과 참구과 한방생절과 산성제절과 한방용급 정상 또는 해당사항 없음	N	10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 식 /단위	예시	비교
10	주상병 코드	MAIN_S ICK	 명세서 상의 주상병의 분류기호 통계청 고시에 따른「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4, 5, 6차 상병분류 기호 참조 ☑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 병태가 둘 이상일 경우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한 가지 병태가 주상병 ☑ 진료 개시 후 주된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발병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자원소모가 많다고 하여도기존 주상병유지 ☑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 증상이나 검사의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주상병으로함 	Text	R01	•
11	부상병 코드	SUB_ SICK	 명세서 상의 주된 상병분류기호 외의 추가 상병(부상병)의 분류 기호 결측(ZZ), 정상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4, 5, 6차 상병분류 기호 참조 ☑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부상병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제공 ☑ 진료기간 중 다루지 않은 과거에 진료 받았던 병태는 부상병이 아님 	Text	C780	•
12	요양일수	VSCN	수진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내원(또는 입원일수)와 원내투약일수가 중복일 때는 1일로 계산함 내원일수는 초진과 재진을 포함함	N/일	22	
13	입내원 일수	RECN	 (입원진료) 수진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퇴원 일까지의 실 일수 (내원진료)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 수 1일에 2회 이상 동일인에게 초진 및 재진을 한 경우 내원일수는 1일로 표기됨 	N/일	3	
14	심결 가산율	EDEC_ ADD_ RT	요양개시일자 기준으로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 적용되는 진료비의 가산율(%) 요양기관 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상급 종합병원 30% 22% 종합병원 25% 18% 병원(요양병원 포함) 20% 15% 의원, 보건의료원 등 15% 11% ※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바이러스 혈청검사 등)는 0으로 표기됨	N/%	30	
15	심결요양 급여비용 총액	EDEC_ TRAMT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정산심사결과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인「심결본인부담금」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심결 보험자부담금」합친 금액 심사 결과 삭감사유(주상병 누락, 착오 청구 등) 발생으로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이 심결본인부담금 및 심결보험자부담금의 합과 다르거나 "0"일 수 있음 (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등) 	N/원	38570	
16	심결본인 부담금	EDEC_ SBRDN_ AMT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통해 결정된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N/원	1250	

		제공항목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i>표</i> 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7	심결 보험자 부담금	EDEC_ JBRDN_ AMT	•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N/원	4580	
18	총처방 일수	TOT_ PRES_D D_CNT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의 합	N/일	63	
19	데이터 기준일자	DATA_ STD_DT	• 데이터 작성 기준 일자	YYYY MM DD	2016 1220	

※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개방항목의 경우 개별 코드 값의 명칭 제공 시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제공 서버의 부하 및 다운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코드 값만 제공함, 해당 코드의 명칭은 항목 설명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3. 진료내역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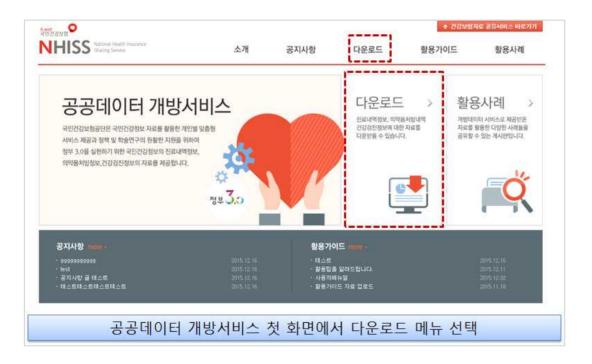
- 행정구역이 연도별로 각각 코드화 되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2011년까지의 데이터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주상병코드와 부상병코드의 경우 통계청 고시에 따른「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6차 개정판 (KCD-6)」상병분류 기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청 고시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제7차 개정판」이 시행되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02년~2015년의 진료내역정보가 존재하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내역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진료내역정보) 다운로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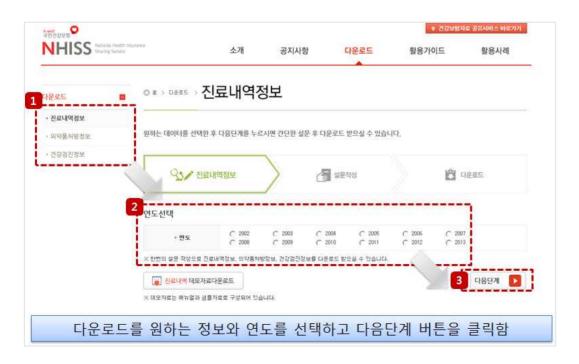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http://nhiss.nhis.or.kr/op/it/index.do)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활용 방법 소개

1) 1단계: 국기중점 개방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메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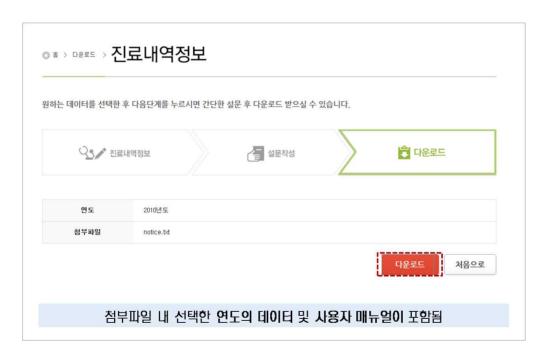
2) 2단계: 진료내역, 의약품처방, 건강검진 정보 중 다운로드를 원하는 정보와 연도 선택



3) **3단계**: 연령대, 성별, 사용자 거주 지역(시도 단위), 사용목적 등 간략한 사용자 정보 입력(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사용자의 주된 사용자층과 이용목적 등을 수집하여 향후 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4) **4단계** : 최종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함, 첨부파일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도의 데이터 및 사용자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음



제5절 사용자 지원 사항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활용가이드 및 사례 제공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활용 가이드로 제공한다. 그 밖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효과적인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문의기능 지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 내에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다. 그 외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케 한다.

3.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다운로드 전에 데모자료 제공기능 지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다운로드 전에 사용자가 해당 정보의 데모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된다.

Q&A 묻고 답하기

-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의 활용하고자 할 때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 ⇒ 아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활용 하여 의료서비스 관련 어플이나 사이트 등을 개설하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 ⇒ 가능하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개별 법령 (의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3.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의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하다. 학술·연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가?
- ⇒ 학술·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표본에 대한 건강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어야한다. 그러나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웹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량의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축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의 대한부분적 편집이나 가공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이기때문에 학술 연구자들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데이터에 비해 개방항목의 수도적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술·연구용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표본연구DB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